## 조합원 가입 신청서

(자연인용)

성	명		주민등록 앞7자 (외국인등	·리		_	가구	7원수			
주	소					전호	바번호				
거	거 소					휴	대 폰				
인수예정출자 (가입)금		좌 천원	좌 천원 생년월일 (음,양)			결혼 (-					
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											
농업종사구분 농업경영주( ) 가족원인 농업종사자( )											
자격확인 서류 경영체등록확인서( ) 농지대장( ) 축산업등록증( ) 인삼경작확인서( ) 기타( )											
사업장소재지						임차기 (사업장 임:	간 차 시)		~		
영농 · 축산 현황		논			m² 밭					m²	
		소	두 돼?					두			
		시설원예	m² 꿀틱					군			
		채소,과수,화훼	m² 인실		-			m²			
		곤충	(	) 마리 잠종(2만립)		난립)			상자		
		기타			m²,두,수	농업종사일수		1է	현 중	일	
디	른조합이	의 가입유무	조합명:			그 조힙	<b>라의</b>	관계			
본인은 농협법 및 귀 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
			년	٩	월 일	]					
	가입신청인								(인)		
자 격	상기 신청인은( )영농회(축산계,작목반,리·동) 관내에서 농업(축산업)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
학		(え)・・	읍)면	(동)	리	영농호	희장(		)	(인)	
인	세종대왕농업협동조합장 귀하										
고 지 사 항	<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(첨부) 참조 >										

- 주) 1.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대장, 자경증명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인삼경작확인서 등 첨부
  - 2. 자격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영농회장, 축산계장, 작목반장, 농지위원, 리·동장 등에게 받음. 다만, 농업인 확인서류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 농업인임을 확인한 경우생략 가능

## 조합원가입에 따른 출자금 핵심설명서

설명내용	확인
①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	
② 농축협의 자본금이 납입출자액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하여 환급합니다.[농협법 제 32조, 제107조, 제112조]	
③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분 전부를 일시에 지급할수 있으며, 일부 금액을 분할 환급할 수 없습니다. 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	
④ 조합원의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, 출자금 환급은 농축협의 당해연도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결산총회 승인 일 (익회계연도)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.	
[농협법 제3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 ⑤ 배당금은 매회계연도 결산총회 후 농축협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결정되며, 회계연도 중 탈퇴시 이용고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[정관 제148조제1항, (품목농축협 정관 제146조제1항)]	
⑥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. [농협법 제21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3조]	
⑦ 주소, 전화번호 등 조합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변경 및 조합원 자격 변경, 상실 시에는 즉시 농축협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	
⑧ 사업미이용 및 의무불이행 등의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제명 될 수 있습니다. [농협법 제30조, 제107조, 제112조, 정관 제12조]	
⑨ 조합원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 당할 경 요	
위 설명내용을 잘 들었고, 농축협 출자금은 (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), 농축협이 자본잠식 될 경우에는 (감액된 출자금)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, 환급청구는 (탈퇴 다음 회계연도 결산총회 승인일)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였습니다.	
는 기에에 있습니다. (인, 소	· 명)
담 당 직 원 확 인 ··	
(세종대왕농업협동조합 ( )은(는)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( )에게 설명하였습니다.	]
(인, 시	너명)